

# 서울시립교향악단 예비비 사용 보고

## 1. 보고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제3항에 의거, 재단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행전안전부 질의, 서울시 감사위 사전컨설팅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오케스트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채용안을 마련하여,
- '23.1.~4월까지 8년 만에 진행된 교향악단 단원 채용계획의 결과로 총 3명(호른 부수석 1명, 첼로 부수석 1명, 비올라 단원 1명)을 선발하여 예비비로 편성된 정·현원차 봉급예비비의 일부를 인건비로 편성함
- 예비비 사용 규모: 112,110천원(예비비 전용시기: '23년 6월)

(단위 : 천원)

정책	단위	세부사업	예산액	예비비사용	최종예산액
인건비			11,139,153	112,110	11,251,263
	인건비		11,139,153	112,110	11,251,263
예비비			560,387	△112,110	448,277
	예비비		560,387	△112,110	448,277
		정·현원차 봉급예비비	560,387	△112,110	448,277

※ 호른 부수석의 경우 재직 단원이 부수석으로 채용되어 보수 변동액과 4대보험 변동분만 반영

## [별 첨 1] 보고근거

### ■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서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